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가단2130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혁

변 론 종 결 2022. 10. 6.

판 결 선 고 2022. 11. 10.

주 문

1. C[D생]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0. 11. 4. 접수 제184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24.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400,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그 거래 상대방 회사는 2020. 10.

22.경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11. 19. 위 회사에 보험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20. 11. 3.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0. 11. 4.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외에도 34억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는 사해행위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가 아버지인 망 F로부터 상속받은 금양임야로서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는 대신 동생인 피고에게 상속분 상당의 가치만큼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3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C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봐도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창호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남 함안군 G 전 218㎡. 끝.

